



제 429회 국회 (임시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총포·화약류 및 마약류 불법 정보 차단을 위한 부가통신사업자 의무 강화〉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48호)

2025.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총포·화약류 및 마약류 불법 정보 차단을 위한 부가통신사업자 의무 강화 ..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충권의원 등 15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9. 19.

다. 회부연월일 : 2025. 9.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포·화약류 및 마약류의 제조 등과 관련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불법촬영물등과 마찬가지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불법정보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Ⅲ. 검토의견

1. 총포·화약류 및 마약류 불법 정보 차단을 위한 부가통신사업자 의무 강화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실을 인식하면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마약류의 사용·제조·매매 관련 불법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부가통신사업자가 이러한 불법 정보의 유통 사실을 인식하면 즉시 삭제나 차단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불법정보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 ----- ----- ----- ----- ----- -----

현행	개정안
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② ~ ⑥ (생략)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u> 5. 「<u>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u>」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 <u>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u> ② ~ ⑥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중 사제 총기에 피격되어 사망한 사건에 이어, 최근 인천에서도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제작한 사제 총기로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온라인을 활용한 마약매매가 이루어지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총포 제작이나 마약 관련된 불법 정보가 직접적인 사회적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논의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¹⁾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공개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나 이용자의 신고·삭제 요청이 있으면, 부가통신사업자 및 웹하드 운영자 등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로 구성된 ‘조치의무사업자’는 이를 인식하는 즉시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등 유통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지체 없이 취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총포·화약류 및 마약과 관련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유통 방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최근 빈발하는 범죄의 기반이 되는 불법 정보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 개정안은 이러한 정보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요청이나 신고·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유통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불법 정보의 유통 시간을 최소화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함.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총포와 화학류의 정의를 명확하게 인용할 필요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 및 화약류의 정의를 명확히 인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2)에 따라 화학류에 대한 정의와,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3)에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화약류”란 다음 각 호의 화약, 폭약 및 화공품(火工品: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따라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 등으로 총포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음.

- 동 개정안은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수범자가 법문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라는 표현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정의 규정을 원용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디지털 성범죄물 규제 조항에 총포류, 마약류 등 성격이 상이한 내용의 포함이 적절한지 검토 필요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의 불법촬영물 방지 조항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의 일환으로 성범죄착취물 등에 대한 별도의 유통방지 등에 대한 규제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조항으로 총포류와 마약류의 경우에도 성착취물 등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해당 조항은 2020년 3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확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같은 해 5월 국회가 불법촬영물 등(성폭력 동영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를 명시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것임.
- 총포류, 마약류 등의 경우에도 이러한 불법 성착취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통방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동 법의 법체계와 해당 조항의 연혁 등을 감안하여 판단이 필요함.

□ ‘그 밖의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괄적 위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필요

- 동 개정안은 성착취물, 총포류 제작,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와 유사한 정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유사한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침익적인 행정조치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정보’의 기본적인 내용과 범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

하는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부가통신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적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그 내용과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 시행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위임 입법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지원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중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2014헌가2, 2016. 3. 31.)⁴⁾에 따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원금 부정수령자에 대한 제재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면서, 그 범위나 기간 등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반인은 지급제한의 방식이나 기간, 반환 범위를 법률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어, 행정청의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4)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2014헌가2, 2016. 3. 31.]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지원금의 부정수령자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제한에 대하여는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리하여 구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규정내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취지, 지원금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체계적·유기적으로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간이나 정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되고 그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원받은 금액 중 얼마까지 반환하여야 하는지 그 대강의 내용을 법률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을 부정수령한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제한기간 및 반환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채 이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동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총포·화약류 및 마약류 제조 관련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해당 조항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물 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 불법촬영물, 성적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빠르게 재유통되는 특성을 가진 디지털성범죄물을 대상으로 별도의 유통방지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함.

이에 성격이 상이한 총포·화약류 및 마약류 제조 관련 정보를 불법촬영물 등에 포함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의 입법취지와 법체계, 불법정보의 특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의 확대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동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총포·화약류 및 마약류 제조 등 관련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를 ‘불법촬영물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디지털성범죄정보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아울러,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침해나 위협을 가져오는 특성을 고려하여 “불법촬영물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정안 검토과정에서 정보의 특성 및 법률간 체계정합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동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총포·화약류 및 마약류 제조 정보를 ‘성착취물’과 동일한 계층으로 취급하여 동일 수준의 조치를 법정 의무로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DNA 차단기술 및 데이터베이스(DB) 제공이 부재한 상황에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책임자가 동일 수준의 대응을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동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에서 규율하는 정보와 동 개정안에서 신설하는 정보의 차이로 인해,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사적 검열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마약류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일상어를 활용한 은어 등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많아, 동 개정안에서 신설된 정보를 규율하

기 위한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상 일상적인 게시물까지 기술적 조치의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총포·화약류 제조 관련 정보 등은 불법촬영물에 비해 수요나 복제 가능성, 신속한 차단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서까지 별도의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개정안은 총포·화약류·마약 관련 불법 정보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신설하여 신고 시 즉시 차단함으로써 범죄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함. 다만, 총포 및 화약류의 정의를 명확히 인용하고, 대통령령 위임이 포괄적 위임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함. 또한, 디지털 성범죄물 규제 조항에 총포류·마약류 등 성격이 다른 내용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 침해나 사적 검열 우려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225
